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16 · 7 · 5 조례 제12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천시 국어진흥 조례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 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이천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5.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등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할 때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시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15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4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위원장은 시장 등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 조사와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제14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담당부서의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여 국어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와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었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